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의 〉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7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29일

## 3.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농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4조)
- 라.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마.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19. 3. 28. ~ 2019. 4. 17. (의견제출 없음)
-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23.)

## 6. 검토의견

### ○ 조례안 제정취지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배경에서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리 신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였음.

### ○ 제정안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경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조례의 목적을 두고 한국수화언어, 농인, 농문화 등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통역사 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농인 등의 편의증진)의 경우, 농인 등의 편의증진 요청 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지원과 공공행사, 공공시설운영, 공영방송 등에도 수어통역을 지원<표 1>하고 영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표 1〉 2018년 관공서 등 수어통역 내역

구분	행사(교육, 회의)명	날짜	장소	주최 및 주관
관공서	마포주간뉴스	매주 금요일	마포구청 방송실	마포구 공보담당관
	마포구산년회	1월 11일	케이터틀	마포구 총무과
	사회복지기관장 간담회	2월 6일	중앙도서관 대강당	마포구청
	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2월 28일	마포구청 회의실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마포구 장애인 신체활동지원 사업 설명회	4월 19일	마포구의회 다목적실	마포구 보건소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5월 28일	성산1동주민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장과의 간담회	6월 25일	마포중앙도서관 대강당	마포구
	서울50+국제포럼	6월 28일	서울창업허브10층	서울시50플러스재단
	마포구청장 취임식	7월 5일	마포구청 대강당	마포구 복지행정과
	마포구사회복지대회	9월 6일	마포중앙도서관 대강당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새우젓축제	10월19~21일	평화광장	마포구 문화진흥과
	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11월 1일	마포구청 회의실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50더하기포럼	11월 21일	50+중부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마포구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11월 26일	마포구청 강당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구분	행사(교육, 회의)명	날짜	장소	주최 및 주관
기타	행복한마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전달식	4월 10일	우리마포복지관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의 날 기념 동고동락	4월 17일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포구장애인한마음축제	4월 19일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마포장애인단체총연맹
	마포거북이마라톤행사	4월 28일	평화의공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일상적 권익옹호 교육연수	5월 24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식	5월 28일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6월 5일	기톨릭청년회관	마포구장애인정책연대
	노인의 날 행사	10월 2일	우리마포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마포구장애인체육회 회의	10월 10일	마포구의회 다목적실	마포구장애인체육회
	장미콘서트	11월 5일	마포청소년수련원 강당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복지포럼	12월 12일	50+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미래복지 정책 특강	12월 21일	50+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료출처: 마포구,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마포구지회-마포구수어통역센터)

- 안 제5조(지원)의 경우는 한국수어 활성화 활동의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구청장 주관·주최 행사의 수어통역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규정을 정하였음.

### ○ 종합의견

- 2019.5.31.기준 마포구 한국수어사용자는 농인 외에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합하여 청각장애인으로 1,782명이 있으며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거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언어장애인은 107명으로 마포구 전체 등록장애인 13,113명 대비 14.40%인 1,889명으로 파악됨. <표 2~3>

〈표 2〉 청각 및 언어 등록장애인 현황

(2019. 5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누계	1,889	26	267	229	490	573	304
청각장애	1,782	25	261	193	426	573	304
언어장애	107	1	6	36	64	-	-

(자료출처: 마포구)

〈표 3〉 동별 청각 및 언어 등록장애인 현황

(2019. 5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청각장애	언어장애
계	1,889	1,782	107
공덕동	219	204	15
아현동	105	97	8
도화동	119	115	4
용강동	78	70	8
대흥동	62	60	2
염리동	66	64	2
신수동	99	93	6
서강동	108	100	8
서교동	101	96	5
합정동	101	98	3
망원1동	116	110	6
망원2동	108	102	6
연남동	85	80	5
성산1동	98	92	6
성산2동	279	263	16
상암동	145	138	7

(자료출처: 마포구)

- 아울러, 2011년 3월에 성산동 소재 마포구수어통역센터를 개소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과 교육서비스 등의 사업에 시비를 보조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마포구지회 한국수어교실 등에도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구비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제정 파악결과 16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표 4~5〉

〈표 4〉 마포구수어통역센터 예산내역

(단위: 천원)

계	인건비	복지포인트	농아인쉼터 조성		재원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운영비	
337,223	200,794	1,060	125,369	10,000	시비 100%

〈표 5〉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마포구지회 예산내역

(단위: 천원)

계	사업비	사업내용	재원
7,000	7,000	2019년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농인의 교육권 보장 지원 프로그램」 (한국수어교실, 스마트폰교실, 공예교실)	구비 100%

(자료출처: 마포구)

-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6)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와 같은법 제16조7)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3조8) 등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에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됨.

- 6)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8)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이정화
연 락 처	02-3153-8883

24moving stickers  
히로와 나누는  
사랑의 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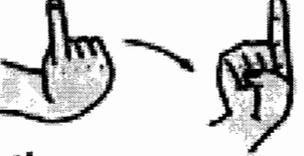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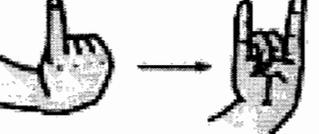


IVU



Copyright ©열린책장 All Rights Reserved.

참고자료 - 지화이미지

k, g  ㄱ	n  ㄴ	t, d  ㄷ	l, r  ㄹ	m  ㅁ	p, b  ㅂ
a, ha  ㅅ	o  ㅇ	j, ch  ㅈ	ch  ㅊ	k  ㅋ	i  ㅌ
p  ㅍ	n  ㅇ	z, sh  ㅉ		a  ㅑ	ya  ㅓ
u  ㅜ	yu  ㅠ	o  ㅡ	yo  ㅝ	oo  ㅞ	yoo  ㅟ
eu  ㅡ	eei  ㅣ	ea  ㅈ	yea  ㅊ	e  ㅑ	yo  ㅓ
wo  ㅜ	woo  ㅠ	woo  ㅝ	Na  ㅞ		
Woo  ㅞ		Woo  ㅟ		Woo  ㅟ	